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나1699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나16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2층 및 5층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피고 또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C선교회가 신축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D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같은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하고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위반에 의한 무효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6.26.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서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